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 의 록

일 시	2026년 8월 20일(목) 15:00~16:30
장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본관 2층 중회의실
출석위원	(9인 출석) 고정호 김지원 문 옥 양정희 오왕규 윤용해 이동현 이상기 이안호
의사일정	1. 위촉식 2.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3. 회의 공개 여부 결정 4. 의정비 관련 자료 설명 5. 지급기준액 논의 6. 다음 회의 일정 결정

법무의회팀장 안녕하세요? 법무의회팀장 여태은입니다.

먼저, 자리 배치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지하신 핸드폰은 진동이나 종료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촉장은 김정식 청장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전달방법은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청장님께서 위원님 앞으로 가서서 전달하시겠습니다.

(위촉식 진행)

(인사말씀 후 청장님 업무복귀)

다음은 위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책상에 배부해드린 선서문으로 별도의 선서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서명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같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처음 위원님을 소개하는 것이므로 사회자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성명 가나다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정호 위원님이십니다.

김지원 위원님이십니다.

문 옥 위원님이십니다.

양정희 위원님이십니다.

오왕규 위원님이십니다.

윤용해 위원님이십니다.

이동현 위원님이십니다.

이소연 위원님께서서는 사정상 조금 늦으신다고 합니다.

이상기 위원님이십니다.

이안호 위원님께서도 사정상 조금 늦으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회의에는 재적위원 여덟 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법무의회팀장 다음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역할은 회의를 주재하시고 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게 되면

구청장 및 의회 의장에 공문을 발송하시게 됩니다.

또한, 회의 일정 등을 협의하시고 결정하시는 데 있어 조정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부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 시 대신 회의를

주재하시게 됩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임시위원장님이 진행해주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은 위원님 중 최고 연장자가 진행하는 것이

통상 관례이므로 본 위원회도 관례에 따라

최고 연장자께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무의회팀장 본 위원회 위원님 중 최고 연장자는 A 위원님이십니다.

A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임시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안녕하세요십니까? A 위원입니다.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고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선출 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위 원 그다음 연장자로 C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지금 A 위원님이 임시위원장님이시고요.

위원장님을 다시 선출해야 합니다.

B 위 원 부위원장님부터 선출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부터 선출해야 하는 거네요.

그럼, A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D 위 원 A 임시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신가요?

위 원 들 없습니다.

위 원 장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원 장 다음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위 원 C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 원 장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신가요?

E 위 원 F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 원 장 그러면, 두 분 위원님이 추천되셨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 원 들 없습니다.

위 원 장 투표용지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F 위 원 아니요, 저도 C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 원 장 사퇴하시는 건가요?

F 위 원 네.

위 원 장 F 위원님이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C 위원님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정비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무의회팀장 위원장님께서 먼저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위 원 장 45만 미추홀구 자생단체 주민 대표님을 모시고 제10대 미추홀구의회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진행하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4년을 언약하는 약속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진득한 심의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의회팀장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C 위 원 예,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의회팀장 지금부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 원 장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본 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및 비공개에 대하여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 시에는 회의장 방청이 금지되지만, 회의록은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회의를 공개로 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장 지금 G 위원님께서 참석하셨기에
거수 결과, 출석위원 9명 중 공개 9명 만장일치로
본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로 진행됨을 선포합니다.

법무의회팀장 네, 그다음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 한 분 도착하셔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G 위원님 오셨습니다.

G 위 원 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 원 장 오늘은 의원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회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자료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비 금액을 잠정 결정하고
주민의견 수렴 방식을 결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본 위원회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위원회의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의정비 심의 관련 자료설명]

위 원 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은 사전에 안내해드린 자료이므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자료 필요시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십니까?

위 원 들 없습니다.

위 원 장 그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7년 월정수당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7년 월정수당은 설명해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제1안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이내 인상

제2안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초과 인상

제3안 작년보다 삭감되는 삭감안

제4안 작년과 동일한 동결안으로 요약됩니다.

각각의 4가지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에서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이내로 의견을 주었습니다.

법무의회팀장 의견 부탁드립니다.

부 위 원 장 월정수당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법무의회팀장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는 인구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실적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B 위 원 여기 2027년에서 2030년까지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결정되면 2030년까지
이 금액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예, 2030년까지인데 일단은 1차 년도 2027년도 거를 결정을 합니다.

그 이후 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논의를 합니다.

여기서는 2030년까지 의정비를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 위 원 장 인상하게 되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이상이 되면 안되는 거잖아요?
이거 기준을 지금 판정하라고 해주신 거 아니에요?

법무의회팀장 이상이 돼도 되는데요. 이상일 경우에는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과를 보고 나서 그걸 반영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B 위 원 우리가 공청회를 한 해가 2023년도죠?

위 원 장 네, 맞습니다.

B 위 원 저희가 그때 얼마에 맞췄어요?

법무의회팀장 그때는 2024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월정수당이 아니라
의정활동비에 대한 공청회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최대액이 110만 원
이였다가 150만 원으로 바뀌면서 저희는 140만 원으로 정했었습니다.

부 위 원 장 우리 F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하셔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의견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F 위 원 지금 우리 미추홀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또 의회에서도 지금 3.5% 이렇게 의견을 주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을 저희가 인상을 할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에게 의견 수렴을 다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온 내용 그대로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H 위 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한 번 읽어봤는데 미추홀구 재정자립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히 낮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월정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인구 대비 다른 구보다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면서 이게 인상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다른 구의 구민들도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게 맞나 싶어서 저는 동결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법무의회팀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I 위 원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거든요. 오면서 자료를 봤는데 지금 이제 11개 군·구잖아요. 그런데 저희 미추홀구가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4가지 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저도 이제 1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문 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은 주민의견 수렴이 좀 필요하잖아요.

법무의회팀장 동결까지는 의견 수렴이 필요 없습니다.

I 위 원 이거는 인구수 대비해서 이 수당이 책정이 됐는데 재정자립도 부분이 제일 하위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위 원 장 D 위원님?

D 위 원 예, 저번 회의 때 의정활동비를 충분히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미추홀구 재정자립도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재정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동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추홀구 의원님이 받는 총 보수액이 타 구에 비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 원 장 지금 D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3.5% 인상 없이 그냥 동결하자는 얘기 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D 위 원 네, 맞습니다.

G 위 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듣는 과정에서 동결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동결이라 하면 의정활동비하고 지금 수당하고 이렇게 별도로 저희가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결이 지금 현행대로 수당도 동결, 의정활동비도 동결이나 아니면 수당은 공무원 인상률에 따라서 3.5% 이내에서 해줄 것이냐 인상을 해줄 것이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정활동비라고 하면서 제1안이 140만 원 지급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의정활동비가 보조활동비를 제외한 의정활동비만, 그러니까 의정활동비라는 거는 보조활동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법무의회팀장 지금 저희가 2개를 할 건데요. 월정수당이랑 의정활동비를 각각 결정할 건데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월정수당 부분입니다.

I 위 원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는 월정수당입니다.

G 위 원 수당을 동결하자는 거네요. 지금 보수인상률 3.5% 이내라 하시면 어느 정도 됩니까?

법무의회팀장 3.5%로 잡았을 경우에 월 8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G 위 원 이게 3.5% 이내인 거지, 3.5% 까지 인상하는 건 아니죠?

법무의회팀장 3.5% 까지 그 안으로 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G 위 원 우리가 여기서 1%로 해도 되고, 2%로 해도 되는 그런 유동성도 있다고 보고요. 지금의 재정 상황을 봤을 때는 동결하는 게 우리 주민들의 대표성을 띠고서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회 의견은 3.5% 인상은 가되, 의정활동비는 동결을 한다 이런 의견인 거죠? 의회에서는요?
수당은 공무원 인상률대로 가는 게 지금 그게 의회 의견인 거고요.
그런데,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신 거는 그조차도 현실대로 동결하자는 건데요.

E 위 원 의정활동비하고 수당을 같이 동결하자고 지금 하신 건가요?

위 원 장 월정수당만 일단 하시죠.

기획예산실장 일단, 현재까지 월정수당에 대해서 의견 주신 거는 3.5% 이내로 의회랑

똑같이 가자고 F 위원님이 얘기를 해주셨고, 그 외에 동결안은
H 위원님, I 위원님, D 위원님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G 위원님께서서는 동결이신가요?

G 위 원 명확한 의견은 안 드렸습니다.

법무의회팀장 더 의견 없으실까요?

G 위 원 이게 4년에 한 번만 합니까? 지금 이제 보수 인상률 3.5%를 우리가
반영 안 하겠다 하면 4년 동안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법무의회팀장 아니요. 지금은 이제 내년도 기준만 결정을 한 다음에 2028년도부터
2030년까지도 다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수인상률 범위 내
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격년으로 할 것인지, 2분의 1만 할 것인지는 다시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G 위 원 이게 한 번에 끝나야 된다는 저기가 없어요. 예전에 저도 이제 다른 위원
님이 의견 제시를 좀 해서 끌고 가긴 했는데 꼭 이 자리에서 지금 끝내야
된다는 불안감은 버리시고 회의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 원 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실까요?

부 위 원 장 저도 이거 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확인해봤는데 동결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얘기해주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G 위 원 어디에 여쭙보셨어요?

부 위 원 장 저는 주민자치 위원이다 보니까 제가 우리 감사님한테 한번 의견을 여쭙
봤는데 동결안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미추홀구가 지금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런 걸 올리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 원 장 B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B 위 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거 뭐 자립도를 보나 예산을 보나 또 인천광역시
군·구 의정비 현황을 보시면 월정수당이 우리가 남동구 다음이죠?
이게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동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G 위 원 그럼, 동결을 하면 내년에 심의를 반드시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법무의회팀장 아니요. 일단 내년도 기준으로 동결이고요.

2028, 2029, 2030년도까지 다시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G 위 원 이거 속기 됩니까?

법무의회팀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G 위 원 위원님들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고요.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제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는 누구의 대변인이 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주민의 대변인으로 얘기해서 오시는 거고, 의원들도 사실은 주민의 대변인이긴 하지만 또 안으로 들어가면은 또 의회의 대변인으로 참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의 입장 차가 있어요. 그 큰 틀에서는 동결이 맞는 걸로 봐요. 그런데 이제 다수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실까요? 그럼 각각의 2가지 안에 대하여 거수방식이나 비밀 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법무의회팀장 비밀 투표로 하겠습니다.

G 위 원 만약에 인상을 한다고 하면 몇 프로 내로 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법무의회팀장 그건 또 다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투표를 하는 거는 이제 2가지 안이 나왔잖아요. 동결이거나 3.5% 이내이거나 둘 중에 하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5% 이내로 결정이 되면 다시 또 논의를 해서 몇 프로를 할지 정하면 되는 겁니다.

B 위 원 위원장님, 이거 1안 2안 말씀해주세요.

법무의회팀장 번호로 적으시는 게 편하시겠어요?

그러면 1번은 동결로 하고 2번은 3.5%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 원 장 표결 결과, 재적위원 10명 중 3분의 2 이상인 7명 찬성으로 2027년 월정수당은 동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원 장 다음으로 2028~2030년 월정수당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8년부터 2030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 위 원 3년 치를 오늘 결정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2027년도 지나서 하나요?

법무의회팀장 아니요, 의정비심의회는 4년에 한 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구성돼서 그때 4년 치를 한 번에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전에도 다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으로 했습니다.

부 위 원 장 솔직히 의원들도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인데 무조건 동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2028년에는 그래도 지방공무원 인상률에 따라서 결정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H 위 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2023년 거하고 2026년 게 있거든요. 23년 거는 1.4%고 26년 거는 3%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무원 보수인상률 인가요?

법무의회팀장 네, 맞습니다.

B 위 원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봅니다.

H 위 원 제 생각에는 꼭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갈 건 아니고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서 내년부터 1% 이런 식으로 정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법무의회팀장 보수인상률을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그래서 예를 들면 보수인상률의 2분의 1 이렇게는 정할 수가 있죠.

E 위 원 어차피 인상할 거면 공무원 보수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H 위 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좀 순종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B 위 원 이게 평균으로 본다고 하면 2022년부터 2026년도 사이인 2% 대가 제일 맞는 거 같습니다. 기준으로 둘 때는요.

부 위 원 장 그리고, 이게 인상률을 해도 전체적으로 그 나라 경제에 따라서 정하잖아요.

I 위 원 지자체별로 공무원 노조하고 이렇게 협상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B 위 원 그거는 행안부에서 정하는 거고요. 그냥 보수인상률을 따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H 위 원 그러면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서 인상률의 2분의 1 이라든지 3분의 2 라든지 이 정도로 맞춰서 가면 될 것 같아요.

법무의회팀장 그러면 보수인상률 하나, 2분의 1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H 위 원 네, 맞습니다.

D 위 원 금지 사항으로 특정직급의 공무원 보수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원칙적으로 겸직 및 영리 활동은 허용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에 그래서 이 틀에 맞춰서 논의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맞춰서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법무의회팀장 그 경우는 반영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특정직급의 보수를 반영하면 안된다는 건 현재 미추홀구 6급 기준이 얼마다, 5급 기준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반영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안은 보수인상률 대로 가는 거고 2안은 보수인상률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이렇게 2가지 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H 위 원 먼저 인상할 건지 여부부터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상한다고 하면 몇 프로로 할지 이런 것도요.

G 위 원 동결이라도 2028년에는 현행대로 가고 2029년부터 공무원 인상률에 맞출 수 있다 이런 의견도 가능한 거죠?

법무의회팀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B 위 원 위원장님 정리를 해주시죠. 여기서 나온 내용으로 1안, 2안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I 위 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27년도에 동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2028년도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지금 2022년부터 추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1.4%에서 3.5%까지 올라왔는데 만약에 물가 상승 대비해서 4%, 5%로 올라간다고 하면 제 생각은 이제 2028년도, 2029년도 2030년도를 이제 몇 프로로 못 박아 놓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H 위 원 아니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수인상률이 그때그때 달라져서요.

그걸 초과하면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된다고 하니까 숫자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법무의회팀장 그러면, 먼저 동결인지 인상인지를 놓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동결이고요, 2번은 인상입니다.

위 원 장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정할 건지, 일괄로 한번에 정할 건지 먼저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정하는 거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위 원 들 없습니다.

위 원 장 그러면 2028년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일괄로 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 의 원 공무원 인상률 대로 했으면 합니다.

법무의회팀장 그럼 1안은 공무원 인상률을 따라간다는 거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H 위 원 저는 인상률의 2분의 1입니다.

법무위원회장 보수인상률의 2분의 1로 지금 의견이 2개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실까요?

그러면, 1안은 보수인상률로 하고요. 2안은 보수인상률의 2분의 1입니다.

[투 표 진 행]

위 원 장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고 7분의 위원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표를 다시 해야 합니다.

[투 표 진 행]

법무위원회장 다시 논의 부탁드립니다.

H 위 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재정 상태가 안 좋은데 이게 몇 년 사이에 확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상률도 조금씩 서서히 인상하거나 이게 좋을 것 같아서 2분의 1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인상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 생각해서 2~3년 내에 엄청 좋아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갈수록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노인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예산을 사용해야 할 곳이 많아지니까 서서히 인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위원회장 더 말씀드리면, 1차 때는 동결이 6표, 2분의 1 인상이 3표였고요.

2차 때는 동결이 5표, 그다음에 2분의 1 인상이 4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좀 나누시고 한 10분 후에 할까요? 5분 후에 할까요?

위 원 장 그러면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 회]

위 원 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무위원회장 1번이 보수인상률이고요. 2번이 보수인상률의 2분의 1입니다.

참고로, 7표 이상이 나와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투 표 진 행]

위 원 장 투표 결과, 또 5대 4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인상률 5표, 보수인상률의 2분의 1은 4표입니다.

G 위 원 다음에 더 논의하는 게 어떨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의정활동비도 우리가 심의를 해야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다음 회의 때 심의를 하면 어떤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B 위 원 일단 한번 해보시죠.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다음으로 미루는 걸로 하시죠.

H 위 원 네, 여기서 지금 하시죠.

위 원 장 그러면, 2028년도부터 2030년 월정수당은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는 걸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기준 금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에 규정한 의정 자료 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합쳐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한금액이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이 되었고, 우리 구는 월 140만 원

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 결정은 제1안 월 140만 원 지급, 제2안 월 140만 원 초과 지급, 제3안 월 140만 원 미만 지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3가지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에서는 동결(현행유지)로 의견을 주었습니다.

G 위 원 이것도 투표하는 거예요?

법무의회팀장 투표 바로 할까요?

G 위 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안에는 150만 원까지 가능한 건데 미추홀구는 140만 원으로 정해졌다는 부분이 맞습니까? 어떤 기준이었죠?

법무의회팀장 2년 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금과 같이 심의회를 하고 주민 공청회도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I 위 원 공청회에서 140만 원까지로 심의를 했습니다.

법무의회팀장 그럼 투표하겠습니다. 동결이 1번, 인상이 2번입니다. 3번까지 말씀드릴게요. 3번은 삭감입니다.

I 위 원 주민의견 수렴을 하면 공청회를 하는 거고 추천을 받는 건가요?

법무의회팀장 네, 신청 받습니다. 추천도 받고 해서 발표자도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경우는 구 주민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요.

공청회는 대략 100명 안쪽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투 표 진 행]

위 원 장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3분의 2 이상인 9명 찬성으로 2027년~2030년 의정활동비는 월 140만 원으로 동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원 장 오늘 2027년 월정수당과 2027년~2030년 의정활동비 금액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다음 회의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의회팀장 다음 회의 일자를 잡아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일정을 잡아놓은 게 다음 주 월요일 오전 혹시 괜찮으실까요? 8월 24일 오전이나 27일 목요일 오후 가능합니다.

위 원 장 다른 구 결정 사항은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B 위 원 다음 주는 위원님들 대부분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법무의회팀장 그러면, 9월 7일 월요일 오후 4시 가능하실까요?

위 원 들 네, 가능합니다.

위 원 장 2차 회의는 9월 7일 오후 4시로 결정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